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같이 공시합니다.

2025년 12월 17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사명 : (주)리치자산운용
(영문명) RICH ASSET MANAGEMENT CO., LTD.
(홈페이지) <http://www.richkorea.kr>

본점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71 1303호(여의도동,동화빌딩)
(전화) 02-6956-4092

대표이사 : 이종호

담당임원 : (직책) 대표이사
(성명) 이종호 (전화) 02-6956-4092

작성자 : (직책) 매니저
(성명) 함욱 (전화) 02-6956-4092

제출이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6-7호)

최대주주 변경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. 변경내용 | 변경전 | 최대주주명 | 함일덕 외 3인 |
| | | 소유주식수(주) | 130,000주 |
| | | 소유비율(%) | 44.52% |
| | 변경후 | 최대주주명 | 함일덕 외 4인 |
| | | 소유주식수(주) | 140,000주 |
| | | 소유비율(%) | 47.95% |
| 2. 변경사유 | | 주식양수도에 의한 지분율 변동 | |
| 3. 지분인수목적 | | - | |
| - 인수자금 조달방법 | | - | |
| - 인수후 임원 선·해임 계획 | | - 없음 | |
| 4. 변경일자 | | 2025.12.15 | |
| 5. 변경확인일자 | | 2025.12.17 | |
| 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 | 없음 | |

【세부변경내역】

| 성명(법인)명 | 관계 | 변경전 | | 변경후 |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| | 주식수(주) | 지분율(%) | 주식수(주) | 지분율(%) | |
| 함일덕 | 최대주주 | 90,000 | 30.82 | 90,000 | 30.82 | |
| 함욱 |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| 20,000 | 6.85 | 20,000 | 6.85 | 최대주주의 아들 |
| 이강숙 |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| 14,000 | 4.79 | 14,000 | 4.79 | 최대주주의 아내 |
| 함혁 |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| 6,000 | 2.05 | 6,000 | 2.05 | 최대주주의 아들 |
| 호병용 |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| 0 | 0 | 10,000 | 3.42 | 최대주주의 외삼촌 |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최대주주명”란에는 최대주주 본인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수를 기재한다.
- 주3) “소유주식수”는 변경전·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소유주식수를 각각 기재한다. 이 경우 「상법」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및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(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’ 있는 자기주식 포함)은 소유주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
- 주4) “소유비율”은 변경전·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소유주식수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(「상법」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)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.
- 주5)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으로 인하여 종전 2대주주등이 추가적인 지분취득 없이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“3. 인수목적(인수자금 조달방법, 인수후 임원 선·해임 계획 포함)”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관련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.
- 주6) 【세부변경내역】은 변경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 및 변경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지분변동내역을 모두 기재한다. 이 경우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변동내역 산정에서 제외한다.
- 주7) “관계”는 변경전 최대주주,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, 변경후 최대주주 또는 변경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, 변경전·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“비고”란에 최대주주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기재한다.
예시)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
- 주8) 변경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당해 최대주주의 재무상태(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자본총액 등) 기타 변경후 최대주주 관련사항 등을 기재한다.
- 주9) 상기사항 외의 최대주주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